

토양정화책임법제의 이해

박 종 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차 례

- I. 문제의 제기
- II. 토양정화책임의 기본구조
- III. 정화책임의 주체
- IV. 정화책임의 면제
- V. 정화책임의 성질
- VI. 헌법불합치결정의 주요내용
- VII. 개정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



I. 문제의 제기

- 마산한국철강부지사건





사실관계

- 2003. 3. 14. 부영이 한국철강으로부터 X 토지(철강공장부지) 매수
- 2003. 3. 25. 부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 2006. 10.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아연, 니켈, 불소, 카드뮴 등 9개 항목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
- 2007. 9. 18. 마산시장이 부영에게 정화조치명령 발동
- 2007. 12. 4. 부영(원고)이 마산시장(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정화조치명령처분의 취소소송)



원고(부영)의 주장

해당하지 아니함

- 2) 부영은 매수 당시 X 토지의 토양오염을 몰랐고, 그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정화책임이 면제됨
- 3) 마산시장은 X 토지에 대하여 직접적 오염원인자인 한국철강에게만 정화조치명령을 하면 충분함에도 부영에게까지 정화조치명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



쟁점의 정리

- 1st : 부영이 정화책임의 주체인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가?
- 2nd : 만약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면 면책이 인정될 수 없는가?
- 3rd : 직접 토양오염을 발생시키지 아니한 부영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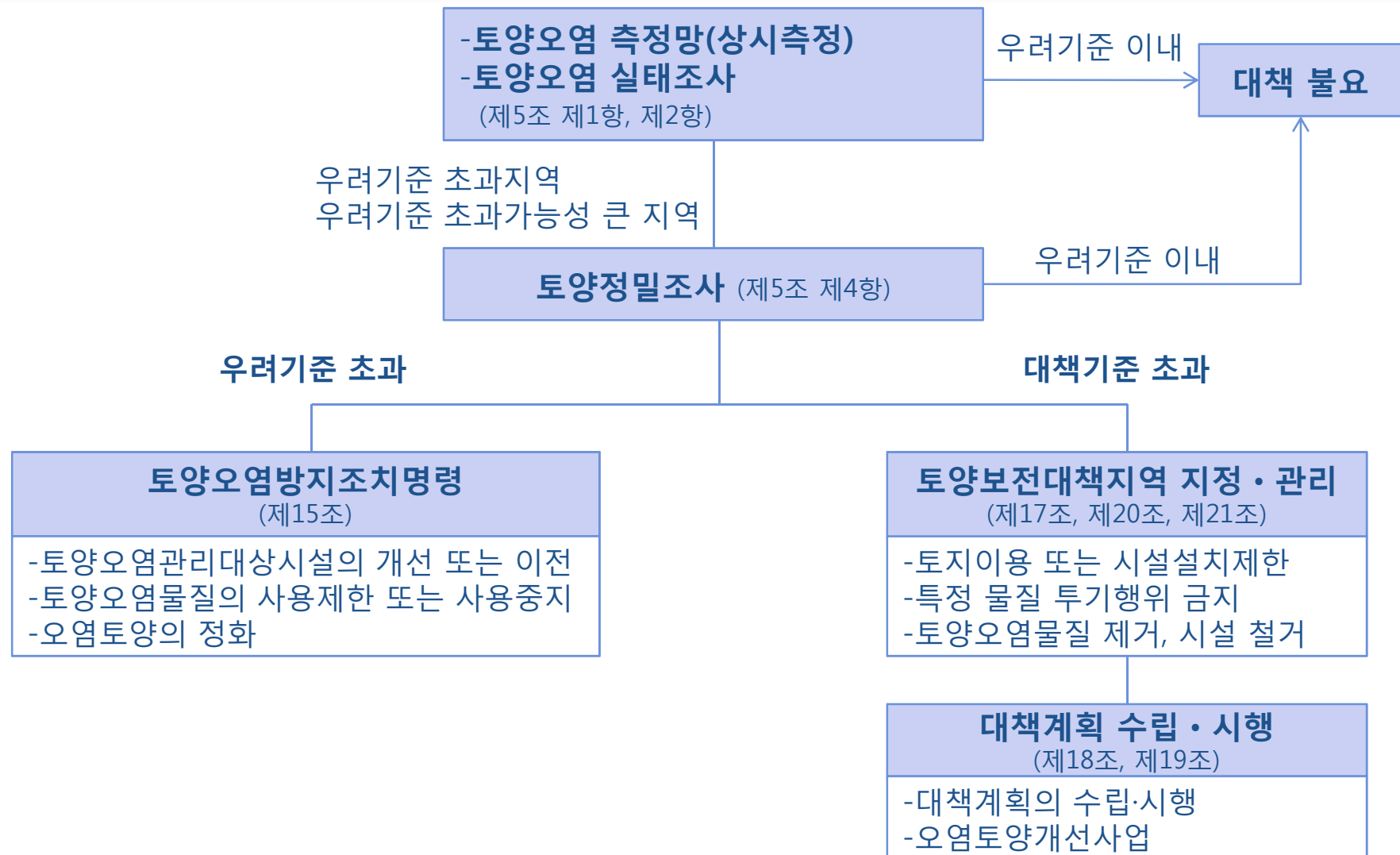


Ⅱ. 토양정화책임의 기본구조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의 기본체계





공법상 정화책임의 발생

●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 (구법 제15조 제3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 정화조치명령의 발동기준

● 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 · 재산이나 동물 ·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제4조의2]



정화조치명령의 발동기준

(단위: mg/kg)

우려기준

토양오염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구리	150	500	2,000
비소	25	50	200
수은	4	10	20
납	200	400	700
6가크롬	5	15	40
아연	300	600	2,000
니켈	100	200	500
불소	400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시안	2	2	120
페놀	4	4	20
벤젠	1	1	3
톨루엔	20	20	60
에틸벤젠	50	50	340
크실렌	15	15	4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벤조(a)피렌	0.7	2	7



Ⅲ. 정화책임의 주체



쟁점의 정리

- 1st : 부영이 정화책임의 주체인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가?
- 2nd : 만약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면 면책이 인정될 수 없는가?
- 3rd : 직접 토양오염을 발생시키지 아니한 부영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가?



정화책임의 주체

● 오염원인자 (구법 제10조의3 제3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 규정에 이하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
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 (구법 제2조 제3호)

14호의 경우에

러하지 아니하다.

시킨 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 토양오염물질

2. 토양오염물질

또는 운영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 경찰책임 (경찰상 위해의 발생에 대한 책임)

● 행위책임

: 자기 또는 자기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질서위반의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는 경찰상의 책임 – 제1호의 오염원인자

● 상태책임

: 물건의 소유자 및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의 지배범위 안에서 그 물건으로부터 경찰위반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 – 제2호의 오염원인자

● 행위책임의 승계: 원칙상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다만,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승계됨 – 제3호 후단의 오염원인자

● 상태책임의 승계: 긍정설 / 승계규범필요설 / 개별적 결정설 / 신규책임설

– 제3호 전단 및 제4호의 오염원인자



법원의 판단

부영이 정화책임의 주체인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가?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된다.
- 공장시설 등의 부지만을 양수한 경우에도 그것이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일부인 이상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설령 그 양수 당시 공장시설의 가동이 이미 중단된 상태이거나 앞으로 그 부지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용도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원고는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소정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



IV. 정화책임의 면제



쟁점의 정리

- 1st : 부영이 정화책임의 주체인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가?
- 2nd : 만약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면 면책이 인정될 수 없는가?
- 3rd : 직접 토양오염을 발생시키지 아니한 부영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가?



정화책임의 면제

● 천재·지변·전쟁 (구법 제10조의3 제1항)

-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화책임의 면제

● 양수인의 선의·무과실 (구법 제10조의3 제3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정화책임의 면제

● 양수인의 면책과 토양환경평가 (구법 제10조의2)

- 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법원의 판단

면책이 인정될 수 없는가?

- 건설전문업체인 원고로서는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철강공장 부지였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법 제 10조의2 제1항의 토양환경영향평가 등 토양오염실태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시설의 상태, 원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한국철강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지하의 폐기물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기로 약정하는 등 위 매매계약의 약정 내용, 그 밖의 이 사건 토지의 규모, 현황, 형성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설령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 상태 및 그 정도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V. 정화책임의 성질



쟁점의 정리

- 1st : 부영이 정화책임의 주체인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가?
- 2nd : 만약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면 면책이 인정될 수 없는가?
- 3rd : 직접 토양오염을 발생시키지 아니한 부영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가?



정화책임의 성질

● 무과실책임 (구법 제10조의3 제1항)

-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화책임의 성질

● 연대책임 (구법 제10조의3 제2항)

-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어느 오염원인자에게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정화책임을 지울 수 있음 (선택재량)
- 하자 있는 재량이 행사되어서는 안 됨. Cf. 민법상 부진정연대책임



경찰책임에서의 다수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경찰상 위해 제거의 효율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가?

- 원고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오염원인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법상 직접적인 토양정화 의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가 한국철강에 대하여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내용으로 정화조치 명령을 한 점,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 상황 및 소유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가?

- <한국철강(원고)이 마산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의 판단>
원고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오염원인자로서 직접적인 토양정화의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가 부영에 대하여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내용으로 정화조치명령을 한 점, 원고와 부영 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을 두고 다툼이 있고 그 해석 여하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비용 최종부담자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중이라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그 소송 확정시까지 유보하여야 할 까닭이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부영에 대하여만 2006. 8. 1.자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부영과 함께 토양정화책임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도 추가로 정화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 상황 및 그 정도, 신속하고도 확실한 토양정화의 공익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VI. 헌법불합치결정의 주요내용



마산한국철강부지 사건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 2003. 3. 14. 부영이 한국철강으로부터 X 토지(철강공장부지) 매수
- 2003. 3. 25. 부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 2006. 10.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아연, 니켈, 불소, 카드뮴 등 9개 항목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
- 2007. 9. 18. 마산시장이 부영에게 정화조치명령 발동
- 2007. 12. 4. 부영(원고)이 마산시장(피고)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정화조치명령처분의 취소소송)
- 2009. 12. 24.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부영 패소)
- 2010. 1. 18. 부영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12. 8. 23.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마산한국철강부지 사건

청구인(부영)의 주장

- 법 시행 이전에 완료된 토양오염행위에 대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에게 그가 명시적으로 인수하지 아니한 책임을 부담시키므로, 자기책임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유류저장탱크 사건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 2004. 10. 16. 정○○, 박○○으로부터 X 토지 임차 및 주유소 운영
- 2005. 6. 21. 토양오염도 누출검사 결과 주유배관 불량
- 2005. 7. 18. 정○○에게 정밀조사 실시 및 토양정화조치 명령
- 2008. 5. 21. 마산시장, X 토지 소유자인 박○○를 상대로 정밀조사 실시 및 그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 2008. 10. 20. 박○○가 마산시장(피고)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정화조치명령처분의 취소소송)
- 2010. 3. 11.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박○○ 패소)
- 2010. 4. 12. 박○○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12. 8. 23.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유류저장탱크 사건

청구인(박○○)의 주장

3) 헌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평등권 침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대상(제2호와 제3호/제4호)을 다르게 취급

4)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함



주요 쟁점

마산한국철강부지 사건

- 1st :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 2nd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유류저장탱크 사건

- 1st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2nd : 평등원칙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의 판단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정의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정의조항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장소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장소'의 의미는 통상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 '등'의 의미는 '장소에 준하는 것'으로 각 해석되고, 위 '장소 등'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이라는 문구에 의하여 그 범위가 한정되고 있다.
- 이 사건 정의조항이 일정한 부지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은,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다는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구법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지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양수자·인수자에게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이 사건 정의조항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거나 법집행 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오염원인자 조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 토양환경보전법은 그 규율대상인 토양오염의 개념을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구법 제2조 제1호)로 정의함으로써,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활동' 뿐만 아니라 그 결과인 '상태'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의 행위 또는 물건에 대한 지배에 의하여 토양오염이 과거에 시작되어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의 시행 당시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종료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종래의 법적상태를 신뢰한 자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헌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오염원인자 조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다수의견)

- 1995. 1. 5. 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은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데, 2001. 3. 28.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 제3호가 시행되면서부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가 오염원인자로 간주되었다.
-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이 2002. 1. 1. 이전에 이루어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상태에 대한 신뢰의 정당성, 책임회피 가능성의 부재, 신뢰침해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토양오염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거·예방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만으로는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은 **2002. 1. 1.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그 양수 시기의 제한 없이 모두 오염원인자로 간주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오염원인자 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다수의견)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일응 자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및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 [침해의 최소성]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그 귀책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 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
 - 다른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및 토양정화 등 책임의 공백 또는 책임 이행의 지연 문제는 환경손해보험 및 토양정화기금 등과 같은 제도로 보완될 수 있다.
 - 구상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의 존재는 오염원인자 조항으로 인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가 받게 되는 침해를 완화하기에 부족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오염원인자 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다수의견)

• [법익의 균형성]

- 오염원인자 조항이 달성하려는 확실하고 신속한 피해배상 및 토양정화라는 목적이 일반 공중의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직결되어 있지만,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는 사실상 면책이 불가능한 1차적인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에 이를 정도로 거액에 이르기도 하는 비용을 그 범위의 제한 없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보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이 다른 책임 완화 수단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를 오염원인자로 보아 손해배상 및 토양정화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오염원인자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다수의견)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와는 달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인수자는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다(구법 제10조의3 제3항 단서).
- 그런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인수자가 부담하는 책임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상태책임에 해당하므로,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 따라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에게 천재·지변, 전쟁으로 인한 면책만을 허용하고(구법 제10조의3 제1항 단서), 다른 면책사유 또는 책임 제한수단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의 제안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반 (제2호 관련)

- 1st : 시설 소유자·점유자·운영자 책임의 보충적 성격 부여
- 2nd : 시설 소유자·점유자·운영자에 대한 면책사유 확대
- 3rd : 시설 소유자·점유자·운영자의 책임범위 제한



헌법재판소의 제안

신뢰보호원칙 위반 (제3호 관련)

- 1st : 2002. 1. 1. 이후에 이루어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로 한정
- 2nd : 2002. 1. 1. 이전의 특정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양수로 한정
+ 국가의 일부 비용 보조
- 3rd : 시적 적용범위 유지 + 양수인 책임의 보충적 성격 부여
or 양수인의 면책사유 확대
or 양수인의 책임 범위 제한



VII. 개정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조 제3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조 제3호)



정화책임의 주체

● 정화책임자의 유형

- 제1호(행위책임)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投棄)·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 제2호(시설책임)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

- 제3호(승계책임)

합병·상속 등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제4호(상태책임)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정화책임의 면제

정화책임 면제사유 (제10조의4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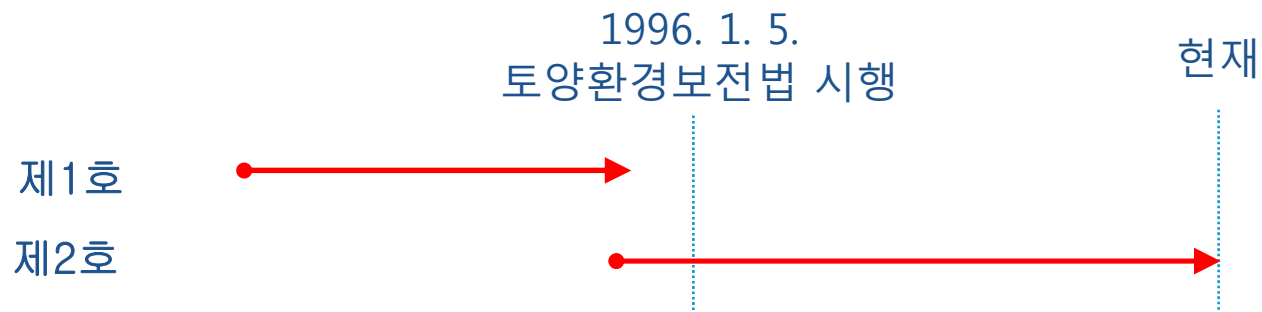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정화책임의 면제

정화책임 면제사유

- 제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이전의 과거 소유자
- 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이전의 토지 양수인



- 제3호: 선의·무과실의 토지 양수인
 - 제4호: 귀책사유 없는 토지 소유자
- ※ 행위책임자 또는 시설책임자에게 자기 토지 사용을 허용한 자 제외



복수의 정화책임자 선택

● 정화조치명령 대상자의 선택 (제10조의4 제3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복수의 정화책임자 선택

원칙: 행위책임 → 상태책임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 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 ...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복수의 정화책임자 선택

예외: 후순위 책임자에 대한 조치명령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복수의 정화책임자 선택

●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자문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정화책임의 성질

● 구상권 (제10조의4 제4항)

-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화책임의 제한

정화비용 지원사유 (제10조의4 제5항)

-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3.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화책임의 제한

정화비용 지원사유

